

動力資源部告示 (第81 - 188号)

石油事業法 제17조의 제1 항의 규정에 의해 石油精製業者 또는 原油 輸入者가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과 관련하여 基準價格 및 同法 제17조의 4 제3 호의 규정에 의한 損失補填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1年 4月 27日

動力資源部長官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價格 原油 또는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損失補填基準

1. 石油事業基金의 징수를 위한 基準 가. 基準價格

基準價格은 原油의 본선인도가격(FOB)을 기준하여 1 배럴당 31.44달러에 677.80원 / 달러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나. 石油事業法 제17조의 3 의 규정에 의해 石油事業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備蓄基金

備蓄基金에 납부할 금액은 輸入原油 1 배럴당 1 달러에 선적일로부터 30일되는 날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安定基金

安定基金에 정액으로 납부할 금액은 輸入原油 1 배럴당 3 달러 50센트에 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原油 및 石油製品輸入에 따른 損失補填基準

가. 令 제 9 조의 5 제 2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해 原油를 기준가격보다 高價로 도입하는 경우의 高價差額에 대한 보전금액은 (原油의 實

도입본선인도가격×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基準價格)×1.036363에서 原油를 基準價格보다 低價로 도입한 경우의 低價差額 [(基準價格-原油의 實도입본선인도가격×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1.036363]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이 경우 공제할 低價差額이 高價差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次期 원유도입 高價差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原油의 實도입본선인도가격 또는 그 수입부대비율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청산할 수 있다.

나. 令 제 9 조의 5 제 2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해 石油製品의 輸入에 따른 1 배럴당 손실보전금액은 [石油製品의 輸入價格 (운임·보험료 포함價格에 수입부대비용을 포함한다)×선적일로부터 30일 되는 날의 환율]에서 稅前 工場渡價格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附 則

(1) 이 告示는 1981년 4월 19일 이후 통관된 分부터 적용한다.

(2) 이 告示 시행 이전에 통관된 分에 대하여는 종전의 例에 의한다.

(3) 動力資源部告示 제80-158호(80. 11. 19) 및 제81-182호(81. 3. 2)는 이 告示 시행일에 이를 폐지한다.